**법 무 법 인 정 관**

**법무법인 ○○○**

대표변호사 **○○○**

**법무부장관 귀 중**

**법 무 법 인 정 관 (sample)**

**제1장 총칙**

**제1조 [명칭]** 이 법인은 “법무법인 **○○○**(法務法人 한자, 영문)(이하 ‘법인’이라고 부른다)”이라 한다.

**제2조 [목적]** 이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

2. 변호사법 제 49조 제2항에 의한 업무

3.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

**제3조 [사무소의 소재지]**

ⓛ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**○○구 (도로명 주소)**에 둔다.

② 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.

북부 분사무소 서울 **○○구 (도로명 주소)**

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 [존립시기]** 이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만 **○○**년간 존립한다. 다만,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**제2장 구성원과 출자**

**제5조 [구성원]**

1.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.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번호** | **구 분** | **성 명** | **주민등록번호** |
| 1 | 주사무소  주재구성원 |  |  |
| 2 | 주사무소  주재구성원 |  |  |
| 3 | 주사무소  주재구성원 |  |  |

2. 대표변호사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.

성 명 : **○○○**

주 소 : **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**

**제6조 [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]** 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. 다만,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의 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를 요한다.

**제7조 [출자]**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목적, 가액,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.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 성 원 | 목 적 | 가 액 | 평가기준 | 출자지분 |
| 000 |  |  |  |  |
| 000 |  |  |  |  |
| 000 |  |  |  |  |
| 합계 |  |  |  | 100% |

**제8조 [지분의 양도]** 구성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따른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**제9조 [자기거래]**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3장 구성원회의**

**제10조 [구성]** 구성원회의는 구성원인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11조 [권한]** 구성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

1. 정관의 변경

2. 구성원의 가입, 승계 및 제명

3.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

4. 대표변호사 선임 및 해임

5. 대표변호사 및 업무담당구성원의 보수결정

6. 분사무소주재구성원의 결정

7. 계산서류의 승인

8. 법인의 해산, 합병

9. 해산에 따른 청산의 선임, 해임 및 잔여재산의 처분

10.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12조 [소집]**

① 구성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

② 정기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고,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.

③ 구성원회의는 대표변호사가 소집한다. 다만, 구성원 0분의 0이상이 회의 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변호사는 0일 이 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[결의방법]**

① 구성원회의의 결의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고, 그 의결권의 과반수찬성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조 제1호, 제2호 및 제8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성원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②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4조 [의결권]** 각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.

**제15조 [회의]**

① 구성원회의의 의장은 대표변호사가 된다.

② 구성원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의사록에는 의 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구성원이 기명․날 인하여야 한다.

**제4장 업무집행과 법인대표**

**제16조 [업무담당변호사의 지정]**

① 이 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 호사를 지정할 때에는 대표변호사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의 집행에 한하여 이 법 인을 대표한다.

**제17조 [대표변호사]**

① 이 법인에 대표변호사 **○**인을 둔다.

② 대표변호사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대표변호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일절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④ 대표변호사 유고시에는 대표변호사가 미리 지정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대표변호사 임기는 O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8조 [보고업무]** 대표변호사는 다른 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9조 [보수]** 대표변호사와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보수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.

**제20조 [분사무소주재구성원]**

① 분사무소에 주재할 구성원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.

②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은 그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한다.

**제5장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**

**제21조 [가입]**

① 구성원의 신규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.

② 구성원이 새로 가입한 때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다시 정하여야 한 다.

**제22조 [탈퇴]**

①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 에 예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성원은 변호사법 제46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 외에 법원으로부터 제명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.

**제23조 [상속]**

① 구성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, 구성원회의 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 다.

②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인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여부를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구성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 으로 본다.

**제24조 [제명의 선고]** 구성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1.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
2.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위반한 때

3. 법인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

4.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때

5.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

**제25조 [지분의 환급]**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. 다만,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.

**제6장 계 산**

**제26조 [영업연도]** 이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27조 [계산서류의 승인]** 대표변호사는 매 영업연도 말에 다음 서류를 구성원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재산목록

2. 대차대조표

3. 영업보고서

4. 손익계산서

5. 손익금처분에 관한 의안

6.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

**제28조 [손익계산]** 이 법인의 손익계산은 영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익금으로 한고, 총손금에서 총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.

**제29조 [배당]**

① 이 법인은 수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가 아니면 구성원에게 이익금 배당을 할 수 없다.

② 이 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든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.

**제30조 [배당비율]** 각 구성원의 이익배당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.

**제7장 해산 및 청산**

**제31조 [해산사유]** 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.

1. 제4조에 정한 존립시기의 도래

2. 구성원회의의 결의

3. 합병

4. 파산

5. 설립인가의 취소

6.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

**제32조 [재산처분]**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.

**제33조 [청산인의 임면]**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한다.

**제34조 [잔여재산의 배분]** 법인의 잔여재산은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.

**제8장 부칙**

**제35조 [정관의 변경]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고,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6조 [시행규칙]**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규정한다.

**제37조 [제1기의 결산]** 본 법인의 제1기 결산은 이 법인의 설립일부터 **○○○**. 12. 31.까지의 것으로 한다.

**제38조 [초대대표변호사]** 이 법인의 초대대표변호사는 변호사 **○○○**으로 선임하고, 그 임기는 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.

**제39조 [정관의 효력]** 이 정관의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위 **법무법인 ○○○**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, 각 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.

20 . . .

**법무법인 ○○○**

구성원 변호사 **○○○**

구성원 변호사 **○○○**

구성원 변호사 **○○○**